

낚시어선업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낚시어선업자는 갯바위등 위험소지가 있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할때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등 상황 발생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낚시객(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낚시객이 준수 할 다음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 낚시객은 낚시어선 운항 등에 있어 낚시어선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나. 낚시객은 갯바위등 낚시장소에서 낚시도중 기상악화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 대피를 위하여 승선토록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다. 만약, 낚시객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자는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등 위험지역중 영업을 제한한 구역에 대하여는 안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낚시어선에는 승선정원 ·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및 이용승객 준수사항을 게시 하여야 하며, 승선자 와 낚시객(승객)전원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5. 낚시어선 영업 제한시간(출입항시간)
하절기(4월~10월)는 22:00~02:00시까지, 동절기(11월~익년3월)는 22:00~03:00시까지로 한다.
※ 단,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설치된 낚시어선은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시간을 적용한다.
6. 술에 취한상태 및 약물(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한다.
7.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에 신고 해야 한다.
8. 해상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운항횟수 제한 : 운항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위 사항을 위반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및 타 법령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